#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24

발의연월일: 2020. 7. 17.

발 의 자:김철민·이원욱·이정문

민형배 · 이해식 · 강선우

김민철 · 한병도 · 이용선

안호영 · 권칠승 의원

(119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,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어 대학원 진학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출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으며, 취업 준비기간 및 적은 소득으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전환대출을 다시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2012년까지의 기대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, 20 12년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다시 시행하며, 교육부장관이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리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(안 제3조제4호, 제8조의3 및 제11조제2항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2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"외국인 및 대학원생"을 "대학원생을 포함하며, 외국인"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삭제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전환대출 대상)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(졸업생을 포함한다)으로 하되,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.

제11조제2항 후단 중 "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"을 "평균수익률을"로 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리 결정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대학생"이란 고등교육기관	4
에 재학(입학 또는 복학 예정	
인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있	
는 학생(외국인 및 대학원생	대학원생을 포함하며,
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	외국인
5. ~ 13. (생 략)	5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8조의2(전환대출 대상) 전환대	<u>&lt;삭 제&gt;</u>
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	
(졸업생을 포함한다)으로 하되,	
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	
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3(전환대출 대상) 전환대
	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
	(졸업생을 포함한다)으로 하되,
	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
	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.
제11조(대출 금리) ① (생 략)	제11조(대출 금리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	2

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 과 실질금리, 대출원리금의 상 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그 금리는 「국채법」에 따 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 간 <u>평</u>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u>평균수익률을</u>